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 동의 절차 신설〉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7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환의원 등 47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1.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을 단위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 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발전 및 송변전 설비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특히 기후위기가 현실의 재난으로 도래하고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구하게 된 오늘날에는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 ----- ----- -----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u>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	⑤ -----

현행	개정안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 ~ ⑨ (생략)	-----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u> 구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u>고려할 사항을 포함하여</u>----- --. <후단 삭제> ⑥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및 개정안 절차 비교

현행	개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u>확정</u> → <u>국회 보고</u>	전략환경영향평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u>국회 동의</u> → <u>확정</u>

개정안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 발전설비 및 주요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¹⁾ 등이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1)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고려할 때,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최종단계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동의 절차를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행정계획으로써 다수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²⁾의 충분한 논의와 합치된 의견을 기반으로 수립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법령상 계획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 및 수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행정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와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91명 참여하였다고 설명함.

중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행정계획의 일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행정부의 재량권 인정 여부,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7